

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공시사항

1. 기본사항

제정일	개정시행일	판매종료여부(종료일)	기존고객적용여부
-	2015.10.05	판매 중	적용

2. 개정대비표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1	제1조 가입대상 가입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다만 무기명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	제 1 조 (적용범위) ① 「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」(이하 "이 예금"이라 한다)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.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.	해당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기존 사항 보완 및 신규 사항 추가
2	제2조 가입금액 및 기간: 제한 없음	제 2 조 (이자)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 중 다음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에 설편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(이하 '원가일'이라 한다)에 원금에 더한다. 1. 보통예금 : 매년 6 월 20 일, 12 월 20 일 ② 제 1 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설편한다.	

<p>3</p>	<p>제3조 예치통화: 원화</p>	<p>제3조 (거래중지계좌) 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거래처가 위계좌로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을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곧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예금잔액이 10,000원 미만이며,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. 예금잔액이 10,000원 이상 50,000원 미만이며, 2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. 예금잔액이 50,000원 이상 100,000원 미만이며, 3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	<p>해당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기존 사항 보완 및 신규 사항 추가</p>
<p>4</p>	<p>제4조 이자결산 매년6월20일과 12월20일에 계산하여 익 영업일 원금에 더합니다.</p>	<p>제4조 (은행제공 수표,어음용지에 의한 거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거래처는 은행이 내어준 수표, 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용지는 거래처가 요청할 때 은행이 내어준다. 다만, 거래처가 요청한 양이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다. 	
<p>5</p>	<p>(신설)</p>	<p>제5조 (거래제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통장이 「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의한 사기계좌로 사용될 경우,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 ③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수표 또는 어음면에 거래처 본인 및 대리인의 	

		성명을 적고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은행은 대리인 명의만으로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지급거절할 수 있다.	
6	(신설)	<p>제6조 (수표·어음금 지급 및 지급위탁 취소)</p> <p>① 은행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내어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거래처에서 지급위탁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② 은행은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한다. 다만, 수표는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거래처가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의 지급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은행이 마련한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어음교환소규약에 따라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.</p>	해당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기존 사항 보완 및 신규 사항 추가
7	(신설)	<p>제7조 (지급특례)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은행에 이행하여야 할 다음의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수표나 지급청구서 없이 해당예금에서 지급하거나 대체결제할 수 있다.</p> <p>1. 각종 이자, 보증료, 수수료</p> <p>2. 수입어음 원금, 수출어음 부도대전</p> <p>3. 어음교환소규약에 따른 제재금</p> <p>4. 콜자금 결제통지서나 콜자금 상환영수증으로 청구 받은 금액</p>	

8	(신설)	<p>제8조 (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) <u>같은 날 거래처의 지급자금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의 지급 또는 그 밖의 채무이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처리하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이 판단하여 처리한다.</u></p>	<p>해당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기존 사항 보완 및 신규 사항 추가</p>
9	(신설)	<p>제9조 (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)</p> <p>① 은행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	
10	(신설)	<p>제10조 (수표 어음금의 지급과 면책 등)</p> <p>① 은행이 수표나 어음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어음 수표의 지급사무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어야 한다.</p> <p>1.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, 발행일이나 수취인 또는 발행일 및 수취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했을 때</p> <p>2. 달력에 없는 날짜를 발행일 또는 지급일로 기재한 수표. 어음에 대하여 그 달 말일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하였을 때(다만, 32 이상의 숫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일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).</p> <p>3. 예금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인감이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도장을 수표 뒷면에 찍은</p>	

		<p><u>횡선수표를 지급하였을 때</u></p> <p>4. "지시금지"란 글자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분명히 적지 않아 그 수표나 어음이 지시금지 수표 또는 어음인지 모르고 지급했을 때</p> <p>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수표법상 횡선위반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했을 때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거래처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.</p>	
11	(신설)	<p><u>제11조 (대리인과의 거래)</u></p> <p>①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수표어음거래에 사용할 대리인 성명과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리인이 「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」상의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수표나 어음의 유통질서를 해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고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해당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기존 사항 보완 및 신규 사항 추가</p>
12	<p>알림</p> <p>1. 이 예금은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</p> <p>2.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,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"최고 5천만원까지" 보호합니다.</p>	(삭제)	<p>원화보통예금 상품설명서 상 해당 내용 명시</p>

3. 담당부서명 : 개인금융업무부

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

제 1 조 (적용범위)

- ① 「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」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.
-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 2 조 (이자)

-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 중 다음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(이하 ‘원가일’이라 한다)에 원금에 더한다.

1. 보통예금 : 매년 6 월 20 일, 12 월 20 일

- ② 제 1 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다.

제 3 조 (거래중지계좌)

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을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곧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1. 예금잔액이 10,000 원 미만이며, 1 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
2. 예금잔액이 10,000 원 이상 50,000 원 미만이며, 2 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
3. 예금잔액이 50,000 원 이상 100,000 원 미만이며, 3 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

제 4 조 (은행제공 수표,어음용지에 의한 거래)

- ① 거래처는 은행이 내어준 수표, 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.
- ② 제 1 항의 용지는 거래처가 요청할 때 은행이 내어준다. 다만, 거래처가 요청한 양이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다.

제 5 조 (거래제한)

① 통장이 「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의한 사기계좌로 사용될 경우,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6 조 (수표, 어음금 지급 및 지급위탁 취소)

- ① 은행은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내어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거래처에서 지급위탁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한다.
- ② 은행은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한다. 다만, 수표는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거래처가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의 지급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은행이 마련한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어음교환소규약에 따라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지급특례)

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은행에 이행하여야 할 다음의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수표나 지급청구서 없이 해당예금에서 지급하거나 대체결제할 수 있다.

1. 각종 이자, 보증료, 수수료
2. 수입어음 원금, 수출어음 부도대전
3. 어음교환소규약에 따른 제재금
4. 콜자금 결제통지서나 콜자금 상환영수증으로 청구 받은 금액

제 8 조 (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)

같은 날 거래처의 지급자금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의 지급 또는 그 밖의 채무이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처리하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이 판단하여 처리한다.

제 9 조 (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)

- ① 은행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청구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 (수표, 어음금의 지급과 면책 등)

- ① 은행이 수표나 어음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, 제 3 호 및 제 4 호의 경우에는 어음, 수표의 지급사무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어야 한다.
1.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, 발행일이나 수취인 또는 발행일 및 수취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했을 때
 2. 달력에 없는 날짜를 발행일 또는 지급일로 기재한 수표.어음에 대하여 그 달 말일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하였을 때(다만, 32 이상의 숫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일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).
 3.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5 조 제 1 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인감이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도장을 수표 뒷면에 찍은 횡선수표를 지급하였을 때
 4. "지시금지"란 글자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분명히 적지 않아 그 수표나 어음이 지시금지 수표 또는 어음인지 모르고 지급했을 때
- ②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수표법상 횡선위반에 해당하여 제 3 자에게 손해배상했을 때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거래처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.

제 11 조(대리인과의 거래)

- ①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수표.어음거래에 사용할 대리인 성명과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은행은 제 1 항에 따라 신고된 대리인이 「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」상의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수표나 어음의 유통질서를 해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고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수표 또는 어음면에 거래처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을 적고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은행은 대리인 명의만으로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지급거절할 수 있다.